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3 - 08 - 024호

안 건 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피 심 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일 2023. 3. 21.

주 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등록 번호	사업자	대표자	사업 내용

II.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8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등록 및 신고 없이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V.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피심인의 영업소는 폐쇄 상태이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안 형 환



위원 김 현



위 원 김 효 재



위 원 김 창 룡

